|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사학과 | **소 속** | 중어중문학과 |
| **학 번** | 2012 | **학 번** | 2013 |
| **이 름** | 강\*\* | **이 름** | 이\*\*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허용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세요 저희는 < 지혜 (知慧) > 팀입니다. 지혜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많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의 미덕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즘의 세태를 보며 상황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사고해보자는 의미에서 ‘지혜’ 팀이라고 지었습니다. 특히 찬성과 반대가 서로 명확한 입장차를 가지고 논쟁하는 토론에서는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논제를 바탕으로 서로를 설득하는 토론과정에서 보다 나은 ‘지혜’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성균 토론대회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깨쳐나가는 <지혜> 팀이 되고 싶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의료 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입니다. 이 대책에는 의료법인이 의료사업과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고, 이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자법인(자회사) 설립을 허용, 원격 의료 도입, 법인 약국 허용 등 대대적인 의료산업 규제 완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 허용이라는 논제의 취지에 맞추어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두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 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법인은 부대사업 및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당위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성장이 선진국형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병원계에도 환자 수 감소, 병상 수 공급과잉 및 낮은 수가인상,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 등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급여비가 감소해 병원의 경영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원경영통계집에 따르면 2012년도 병상 당 의료수익은 4.7%가 증가했지만 의료비용은 7.6%나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대학병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할 정도로 경영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병원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의 수익성을 보존하는 자법인 설립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분명한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행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함으로써 이윤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리 법인 설립을 통해 부대사업 확장과 해외환자 유치 등으로 경영난이 줄어들게 된다면 분명 비급여 진료와 같은 현재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영리 자법인이 가져오는 실효성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원의 사업규모 확장과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 정책이 모법인의 고유목적인 의료업의 외부투자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부대사업, 해외환자 유치사업 또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등에 있어서는 투자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사업규모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영리 자법인 설립은 현재의 시의성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 회원국 중 12위로 괜찮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최하위라며 의료 법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사업 동력을 마련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 중 하나인 의료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성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성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당위성, 실효성, 시의성에 근거해 병원 영리 법인 설립을 찬성합니다. |
| **반대**  **입론** | ‘의료민영화 바람직한가 - 영리병원 설립허용 여부를 중심으로’에 대한 반대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정당성이 없고,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은 그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국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책에 대한 국민정서, 즉 여론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법인 설립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국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법인 설립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수순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형식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인 의료법에 반합니다. 상위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개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현행 의료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회와의 논의도 생략한 채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국민여론과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정당성을 위반하는 병원 영리 법인 설립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병원의 영리 법인 허용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병원의 영리 자법인 허용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부작용으로는 의료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영리 자법인 허용으로 병원이 기업화 되면 환자의 건강이 아닌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을 것이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은 돈벌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영리병원들이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되고 국민의료비 또한 급증합니다. 현재 영리 법인 설립으로 인해 확장되는 부대사업 중 의사가 처방하는 진료와 직결된 분야가 많고, 치료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지만 의사가 처방하면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치료들과 얽혀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연지정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 국민건강보험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될 것이고, 의료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병원 수익의 외부유출입니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목적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활용하여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등의 편법·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행위는 결국 병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병원은 그 부담을 다시 환자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영리 법인 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됩니다. 정부는 자회사의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병원은 자회사에 투자를 해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하고, 자회사 수익의 외부유출로 인해 오히려 병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국민건강과 병원 서비스의 질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격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정당성이 없다는 점, 수 많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사회학과 | **소 속** | 글로벌리더학과 |
| **학 번** | 2013 | **학 번** | 2013 |
| **이 름** | 김\*\* | **이 름** | 이\*\*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저희는 격주로 책을 읽거나 신문으로 발제를 하여 토론을 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항상 여러 주제에서 부딪히기도 했지만 덕분에 서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대회 공고를 보고 저희 둘이라면 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해보고 토론을 준비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인 스펙트럼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빛의 스펙트럼이 빛의 모든 색을 보여주듯이 저희도 이 현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할 때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은 빛이 프리즘의 법칙에 의해 멋있게 퍼지듯이 우리의 논리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고 실제 토론대회에서도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이해종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낮은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민영 보험이 아니라 나라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공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에 따라 걷은 보험료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다 보니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 법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적 보험체계로 가격을 조절하면서 병원들이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로 병원들의 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영리 법인 설립 허용을 통해 의료의 질이 상승하게 됩니다. 많은 병원들이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경영하는 것에 투자할 재정도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의사들을 다그치는 것은 너무 가혹할 것입니다. 영리 법인 설립을 통해 자회사 자체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술,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영리 법인에서 생긴 이윤으로 병원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 문제도 이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의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생긴 손실입니다. 영리 법인을 통해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게 해서 굳이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필요도 없고 비싼 처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영리 법인 설립은 결코 중소 병원이 몰락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리 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중소 병원의 영리 법인도 스스로의 경영 방식 도입을 통해 큰 대학병원이나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합병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부대시설이나 활동을 통한 영리 추구입니다. 우선 기업 합병의 경우에는, 이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특수법인과의 합병은 허용되지 않고 작은 중소병원들이 만드는 영리 법인인 의료 법인들끼리만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병원은 그 전처럼 운영하되, 법인만 합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부분 합병이 부정적인 이유는 거대 자본이 독과점을 하기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인데, 큰 병원들과의 합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병원들은 중소 병원들끼리 연합하여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나 활동에는 크게는 메디텔, 연구개발 등부터 작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구매 지원 등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어 할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자회사의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 법인 설립 허용이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료 보험 민영화로 이어질 확률은 적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병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고,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리던지, 의료 수가를 높여야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늘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의료 수가를 높이면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면 아마 보험공단이 파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공단의 영향력이 줄어 의료 보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면, 지금처럼 건강보험공단의 감시 하에 의료비용을 적절히 유지시키면서, 병원들의 적자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 일거양득할 수 있습니다.  논점을 정리해보자면,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서민, 병원,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서민들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증가 없이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과잉 진료의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병원은 중소 병원이나 큰 병원 할 것 없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고, 국가, 즉 건강보험공단 측은 의료 수가의 확대 없이도 병원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 **반대**  **입론** |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의료 개정 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영리화이며, 병원의 자회사 설립 즉 영리법인의 설립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결국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개발,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정신까지 높여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의료산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한다며 의료법안 개정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결국 의료비용의 증가로 인해 의료양극화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생명권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악영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산업분야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병원의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하고 병원을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시키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폐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희는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병원의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수가제와 국민건강보험의 존재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유지될 것이며 의료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영리병원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치료까지 포함하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리법인의 영향력이 계속 증대되면 결국 비싼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만 이 영리법인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고소득층은 자신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강제성에 대립각을 세울 것입니다. 이런 고소득층의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로 건강보험이 법적 강제성을 잃는다면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이탈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고소득층의 이탈은 건강보험 재정의 붕괴를 야기하고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일으켜 결국 의료양극화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완전한 의료민영화 국가인 미국과 한국의 간단한 수술에 관한 의료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백내장수술비용: 한국 143만 원 vs 미국 507만 원  2. 맹장수술비용: 한국 221만 원 vs 미국 1,513만 원  3. 감기치료비용 : 한국 5000원 vs 미국 10만 원  간단한 감기치료나 수술에 대한 비용도 미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있고 건강보험의 부재로 인해 형성된 가격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병원의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보험의 붕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과 같이 아주 높은 선에서 의료비용이 형성될 것입니다. 즉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의 의료민영화라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의사들의 윤리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병원의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병원도 일반 기업들과 같은 조직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의사들의 목표는 진심을 담은 환자의 치료보다 수익창출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자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생명력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들의 윤리성의 저하를 드러내줄 증거는 바로 ‘과잉진료’입니다. 현재도 과잉진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는 의사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갑상선암 과잉진료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을 완전히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한 섭리라 생각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만 권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더 많이 권할 것입니다. 과잉진료는 단순히 직접적인 진료행위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세운 자회사의 사업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자회사를 세워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결국 영리 자회사의 핵심 사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한테 이들 식품 등을 권하면 어떤 환자가 거부하겠느냐,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제품을 권유하는 과잉진료의 형태로 의사들의 윤리성에 저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병원 즉 소위 동네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을 통해 중소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론 대자본과 결합한 병원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부도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하면 실제로 이 제도의 수혜를 누리는 것은 대기업일 것입니다. 정부가 법안 개정 방안을 내놓은 당시에도 영리법인의 설립 허용은 정부가 주요대상으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병원의 영리법인설립 허용에 관련된 법안 안에는 병원의 의원 임대업 허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이 자신의 규모상의 이점을 이용해 의원 임대업을 운영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거 지역 인근의 동네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동네병원의 붕괴를 가져오는 병원 간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병원, 중소병원 이용자들 또한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상실이라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 간의 의료양극화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점을 정리해보자면,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하려 하는 "오바마케어"처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와 결국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의료비를 끌어올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로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의료산업이 결국 수익창출이란 물질적 요인에 휩싸이는, 윤리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에도 양극화를 야기하고 결국 그 병원이용자인 국민들 간에도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기계공학과 | **소 속** | 경제학과 |
| **학 번** | 2011 | **학 번** | 2012 |
| **이 름** | 유\*\* | **이 름** | 김\*\*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성균 토론 대회에 당찬 포부를 갖고 지원한 'genie'팀입니다. 율전과 명륜, 서로 다른 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저희에게는 지리적 한계라는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토론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비로소 하나가 되었고, 이윽고 팀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인 genie는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알라딘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주는 genie처럼, 토론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켜주는 서로의 genie가 되자는 바람을 담아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균 토론 대회를 소원의 램프로 삼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지금부터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의 찬성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란 의료 보험, 의료 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이 영리화되는 것을 의미하나, 오늘의 토론에서는 부제에 따라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의료기관이 숙박이나 온천, 여행 관련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에 나섰습니다. 의료법인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부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저희 찬성측은 이러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이 정당성과 실효성, 시의성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간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수행이 과도히 제한되어 여러 부진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원천적으로 불허되어 왔습니다. 또한 진료 외 부대사업도 법령상 8개 분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의료인이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주차장 등 이질적 부대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밖에 없어 비전문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결국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문닫는 병원은 늘어만 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폐업은 2009년을 기준으로 5년 만에 약 22%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활성화는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며, 경영의 효율성 또한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부대 사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법인의 영업성과는 배당 및 브랜드‧기술사용에 대한 로얄티 등으로 모법인에게 환류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ㆍ의원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이고, 여행업, 숙박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은 시의성이 있습니다. 의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의료서비스시장은 2015년 $3.8조, 2020년 $5.5조로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선점을 위해 미국,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 일환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진출 목적 자법인의 설립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해외 환자 유치 목적 자법인의 설립, 즉 관광업,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허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또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요컨데 세계 의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찬성측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이 정당성과 실효성, 시의성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반대**  **입론** | 지금부터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의 반대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이러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이 부작용이 많고,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이 병원 자체의 영리화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비영리를 추구해야 할 의료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의료법인의 본질적인 목적 또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영리자회사는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과 유사한 구조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며,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은 첫째,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가격 폭등과 질 하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며, 환자치료 또한 그 일부로서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수의 병원들이 필요 이상의 장비를 이용해 고가의 검진과 수술을 권유하는 등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영리 병원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환자 개개인에 알맞은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7퍼센트만 영리화되어도 약 2조원 가까이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영리법인의 설립이 되레 병원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투자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위원장은 병원 자산을 투자한 자회사가 적자를 내거나 망하게 되면 병원 자산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병원이 축소되거나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의료 민영화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결코 환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의료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공급과 보장이 모두 낮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6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비중을 최소 30퍼센트 이상으로 늘려 공공의료의 공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60퍼센트 수준의 보장성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의료선진국이 보장하는 80퍼센트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된다면, 문제 상황의 타개는 영원히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원칙이 아닌 편법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반대측은 병원의 영리 법인이 부작용이 많고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국어국문학과 | **소 속** | 글로벌리더학부 |
| **학 번** | 2012 | **학 번** | 2013 |
| **이 름** | 이 \*\* | **이 름** | 변 \*\*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세요. 갑 vs 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갑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을이 되곤 합니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의 ‘갑과 을’이라는 코너에서는, 사람들이 갑과 을의 입장일 때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는 을이 없습니다. 주제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갑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갑이 더 논리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가 토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토론하는 것을 좋아해서 뭉쳤습니다. 작년에 아쉽게도 토론대회가 다른 스케줄과 겹쳐서 참가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다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찾는 루트나 능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스스로 찾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저희는 토론을 통해 말하는 것과 논리력을 또 한 번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전달하는가도 중요하고,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자꾸 하게 되면, 논리력도 갖춰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논리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학생활을 하면서, 토론을 할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저희는 의료 민영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논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주제의 소제목대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만을 의미하며,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 민영화와는 별개의 주제로, 이 토론에서는 배제시키고 논의해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의료기술 선진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퀄리티 향상,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만성적자 해결을 근거로 의료 민영화 허용 찬성을 주장합니다.  첫째,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술을 선진화시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가의 입장에서 의료기술 수출과 의료관광 증가로 국가의 부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민영화는 의료행위의 공급을 시장경쟁체제에 맡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병원들은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고, 고객을 많이 끌어들여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할 것입니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의료기구를 개발하고, 의료기술을 혁신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국민의 후생은 증가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그 가격이 다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 용의 역시 상승하므로,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술이 선진화되면, 현재 의료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기만 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우리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형수술 병원과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질이 높다면, 외국인들의 국내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아질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러 한국을 오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2차적인 관광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용주 연구원은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될 경우, 2020년에 외국인 환자 148만 6000명과 동반가족 44만 6000명을 유치하여 4조 1000억원의 진료수익과 9000억원의 관광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둘째,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만성적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이미 1조 3000억원에 이르며,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조하게 됩니다. 민간 보험이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의료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 **반대**  **입론** | 안녕하십니까,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료민영화가 시행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와 의료 보험 민영화의 선을 그으면서 연결선상에 있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는 의료 서비스에 영리 추구의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이고, 병원과 의료재단들은 분명히 이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병원의 영리 병원 설립 금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염려한 것이었고,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게 된다면 그것은 타 산업 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말 것 입니다.  또한 덧붙여, 의료보험 민영화로 이것이 번지게 된다면, 현재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금이 갈 수 있으며, 환자의 개인 정보가 보험을 근거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체계적이고 전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바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보험이 사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개인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병력은 매우 강한 보안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력이 개인의 일상사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정신병력이나 심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 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의료 민영화는 바로 그 단초라는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직결되는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생명의 유지와 발전은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바로 이러한 삶과 생명의 문제에 자본이 개입하여, 의료 서비스에 서열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형평성을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물고기 하나가 강물의 흙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수많은 인명 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언제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이며, 의료민영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영리화는 이것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이 나도 국가에 자신을 치료할 여력이 있다고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는 결국 이러한 사회적 형평성과 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반대 측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며,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결과에 심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자연과학계열 | **소 속** | 자연과학계열 |
| **학 번** | 2014 | **학 번** | 2014 |
| **이 름** | 설\*\* | **이 름** | 고\*\*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저희 팀, ‘Debate’가 이번 성균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1학기 때 교양과목, ‘스피치와 토론’을 함께 듣고 교수님께서 2학기에 성균토론대회에 참가해보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의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정부는 지난 2013년(12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원격진료 허용 정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격의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의료이용을 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산간벽지나 섬에 사시는 분들, 누워계신 노인 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격의료의 도입은 필요합니다.  2) 현재의, 그리고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고령화 사회에 해당하고, 2030년경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 질환에 대한 진료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치료보다는 기능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95%이상을 차지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구조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수용할 수 없기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앞으로의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기법이 필요합니다. 즉 만성 질환이 증대하면 첨단 의료기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됩니다. 만성질환은 현재의 기술로는 완치가 어려우므로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건강검진과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재활 진료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병력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처방이 요구되는데,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병력관리를 해주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재활진료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에 정기적인 통원 및 입원이 필요했던 만성질환의 치료 및 재활진료를 증상의 정도에 따라 가정진료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와 불편을 절감하여 특히 고령 만성질환자에 적합한 진료 형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료법인과 타형태의 병원들 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는데,이 중 자법인을 세울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이미 외부 투자자와 합작을 해서 자법인을 설립하고, 의료연구개발에서부터 호텔에 이르기까지, 수익사업 운영에 별다른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익으로 병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간호사 등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지금의 우수한 대형 병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언급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정책’은 우리나라 병원의 29%를 차지하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에게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같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이 지역의 중소병원인 의료법인 병원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4)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본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경영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병원도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의료법인 병원은 부대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지역 환자를 진료하여 벌어들인 제한된 수익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병원 시설장비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은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법인에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지역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병원이 가진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 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법인에서 얻는 수익은 병원의 시설 개선과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골고루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본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의료기술의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들, 국민들을 위한 정책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 **반대**  **입론** | I. 개념 재정의  ‘의료민영화’란 ‘의료공급의 민영화’와 ‘의료수요의 민영화’를 함께 일컫는 말로, ‘의료공급’, 즉, 의료기관(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넘기고, ‘의료수요’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는 의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수요의 민영화’는 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본 토론에서 언급하는 ‘의료민영화’란 ‘의료공급의 민영화’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II. 정책의 당위성 부정  -의료공급의 민영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문제  ‘의료공급의 민영화’는 영리병원의 수익성 우선 주의와 비급여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진다. ‘영리법인 병원’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시장의 돈이 병원을 출입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이다. 즉,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으로 배당되어 수익이 병원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의료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치않다. 의료민영화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메이요 병원 등은 모두 비영리법인 병원들이다. 게다가 매년 미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병원의 순위를 매기는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한 미국 병원의 1~18순위는 모두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었다. 이가 시사하는 바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의료의 질이 정부의 기대치만큼 보다 이하이거나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또 로즈나우와 린더가 2003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 논문 149편을 모아 계통분석을 해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을 비교한 69편의 논문 중 41편이 비영리병원의 질이 더 우수했다고 보고했다. 데버로 등(2002)에 의하면 ‘사망률’을 파악하였을 때,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의 사망률보다 2%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이유는 의사의 수준은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차이가 없지만, 영리병원이 이윤 확대를 위하여 의료진 외에는 값싼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에릭 토마스 등의 2000년도 논문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은 ‘모든 예방 가능한 의료과오’의 발생률이 1.57배 높았고, ‘예방 가능한 수술 부작용’의 발생률은 2.63배 높았으며, ‘예방 가능한 진단 및 치료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오’는 무려 4.15배나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영리병원들이 의료과오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1997년 울핸들러와 힘멜스타인의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의 행정비용이 34%로, 비영리병원의 24.5%보다 높았는데, 이 가격은 환자에게 부담이 갔을 것이고 의료에 대한 지불보다 단지 서비스료가 더 비싸진 결과만을 야기한다. 이는 Myers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두번째 조건, ‘적정수준의 의료 질이 유지돼야 한다. 즉, 의학의 최적성과 사회적 최적성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한다는 말은 거의 의미가 없다. 로즈나우와 린더가 200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논문을 분석한 결과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물이 없고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에서는 비영리병원이 우수했다는 논문이 20편이 있는 반면, 영리병원이 우수했다고 평가한 논문은 단 1편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굳이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현재 국내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의원이 95% 이상을 차지해 병원이 부족하다는 주장 또한 민영화로 해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영국의 경우, 일차의료의 질을 상승시키고 병원 수의 증가를 위해 기존 예산의 30%를 증액하여 투자하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굳이 민영화를 통해 병원을 찍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인과 타형태의 병원들 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시장을 개방하자는 논리는 또 몇 가지 예외 사례를 배제시키기 위해 전체를 바꾸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III. 실현 가능성 부정  ‘의료공급의 민영화’는 ‘민영화의 나라’라고 불리는 영국에서조차 시행되지 않는다.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의 평균의료비는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영국의 평균의료비보다 약 3배나 높으며,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미국이 17.7%, 영국이 9.4%이고, 의료 평가 순위마저 영국이 대략 20위는 웃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의료서비스가 인간을 살리는 의술이 아니라 단지 자본시장임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료는 없다.  IV. 실효성 부정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10.4%로 1인당 GDP가 비슷한 체코, 스페인이 각각 91%, 74%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는 점. 즉, 국내 영리병원은 의료관광은 커녕, 외국인보다 국내인이 더 많이 들어와 치료를 받을 것이라서 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지고, 국민건강 또한 크게 망가질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건강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V. 부작용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공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전반적인 의료민영화가 발생한다면 의료이용의 빈부격차 확대,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보험도입의 가속화로 역사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특히 산업혁명 때의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의료민영화는 ‘규제완화’의 목적보다는 ‘건강보험의 민영화’의 발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경영학과** | **소 속** | **중어중문학과** |
| **학 번** | **2010** | **학 번** | **2012** |
| **이 름** | **송\*\*** | **이 름** | **이\*\***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저희는 중어중문학과 12학번 이민형 (女), 경영학과 10학번 송현돈 (男) 로 이루어진 우주최강 토론 팀 '혀니도니' 라고 합니다. 이름의 끝글자 형과 돈을 귀엽게 발음해 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과, 성별, 나이, 거주지역, 취미, 성격, 말하는 어투 등등 모든 게 다르지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 만큼은 같아서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이민형은 아무나 간파 못하는 핵심을 찌르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느긋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스피킹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송현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영학과 조별 과제의 다수 경험자로서 자료 검색/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내 토론동아리인 SKFC에서 동기로 만나게 된 인연으로 이번 교내 토론대회에서 한 팀을 이루게 되어 이렇게 대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의료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측은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아닌 영리자법인 설립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료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병원의 여러 부대사업을 담당하는 자법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타법인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은 이미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타법인 이외의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병원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글로벌 의료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현재 많은 병원들이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재정난에 따라 폐업하는 병원의 비율이 08년 6.6%, 09년 8.1% 10년 9.4%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들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일 것이고 이것은 곧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의료법인은 자법인 설립을 통해 이러한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법인은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업이나 온천.목욕장업,체육시설 운영 등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자법인을 운영하며 그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선순환되어 곧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줍니다.    병원이 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국내 의료산업을 세계로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내 의료 수준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먼저, 병원은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온천, 호텔과 같은 부대시설을 갖추어 해외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병원이 스스로 만들어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이 영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에 더 유리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해외 진출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시장 조사비용에 대한 부담과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와 전략이 부재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 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해외진출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해외진출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영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이 진료 이외의 다양한 기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 곳에서 오는 병원 고객이나 그의 가족은 병원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을 원할 수도 있고, 온천 시설, 체육 시설 혹은 서점 등 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병원의 영리 자법인은 이렇듯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펴져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병원과 국민에게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떼어놓고는 정책을 생각할 수 없으며, 아픈 국민을 외면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 이제는 허용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
| **반대**  **입론** |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허용을 중심으로 에 대한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기타법인에만 허용했던 자법인 설립을 의료법인에 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간 대형 병원이 그토록 바랬던 자법인을 통한 수익추구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러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점, 부작용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현재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저수가 정책입니다.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통해 각 의료서비스별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 보전율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서비스에 드는 총원가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저수가 정책은 병원의 재정난의 주요원인입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은 국민보험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비싼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고 건강식품을 추천하며 각종 부대서비스를 사라고 환자들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의료수가에 다른 문제는 명백합니다. 정부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바로 이러한 병원들의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더욱 크게 부추기는 겁니다. 낮은 의료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 한 채 자법인이라는 임시방편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은 또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자법인을 설립할 정도의 자금력은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만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3차 병원, 즉 대규모 대학병원에 한정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중소형병원이나 동네 의원의 경우 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설립 자체가 힘들어 자법인을 통한 수익창출은 대형병원들로 점점 더 집중 될 것입니다. 이는 큰 병원은 더 크게, 작은 병원은 더 작게 하는 병원의 양극화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은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찬성 측은 영리 자법인 설립이 경영난을 해소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에 상이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영리자법인이 병원 재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 96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현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결과 흑자 병원 52곳 중 13곳(25%)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영리 자법인이 도입되었을 때, 병원의 적자 총액은 81억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 제 36조 제3항은 명시했습니다. ‘의료법인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할 수 없다.’ 적절한 법적 규제책도 없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과연 이 헌법에 명시된 바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데도 병원에 영리 자법인을 허용시켜주어야 하는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입론 마치겠습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글로벌경영학과 | **소 속** | 글로벌경영학과 |
| **학 번** | 2014 | **학 번** | 2010 |
| **이 름** | 최\*\* | **이 름** | 전\*\*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현재 교내 토론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토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침 성균토론대회가 열린다고 하여 그 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한껏 발휘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현재 사회의 주요 이슈인 만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리력과 숨막히는 실시간 교차조사와 반박을 느끼며 토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지금부터 ‘의료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중심으로’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 걸리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부에서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의료민영화는 정부의 보건의료투자 활성화대책에 따라 중소 종합병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병원의 자법인 설립과 더불어 병원의 영리법인화까지를 의료민영화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제가 의료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 토론자가 의료 민영화의 국가 성장 동력과 의료민영화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음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의료민영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에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2012년 병원경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의료 이익이 최소 1억에서 최대 3억까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환자수가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병원의 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병원이 별다른 돌파구가 없어 발생한 것입니다. 병원은 외부 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만 현재 공공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남은 병원은 외부 자본의 유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면 병원은 기업,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출자는 기존에 자금 확보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부채와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속되는 의료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병원의 자법인 설립 역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을 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아래에 수익성이 큰 부대 사업을 허용하는 자법인 설립은 병원의 장기적 자금 확보에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자법인에 투자한 자신의 지분만큼 자회사로부터 배당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과 병원의 자법인 설립에서 얻어진 여유로운 재정을 바탕으로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병원은 수익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유로워진 재정이 의료서비스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밝아 보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토론자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민영화가 현재의 병원에 그 도입이 시급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반대**  **입론** | 지금부터 ‘의료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중심으로’에 대한 반대 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론에서 찬성 측에서 말한 ~은 ~음을 밝혀드립니다.  영국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많은 산업의 민영화를 이끌었던 대처 수상도 의료서비스만큼은 민영화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분야인 만큼 단순히 이윤 추구를 최우선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이 보건이 걸린 의료 분야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의 영역에 넣는 의료 민영화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토론자인 제가 공공성의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 토론자가 의료민영화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민영화는 공공성을 침해합니다. 영리법인은 그 특성상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병원을 경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3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건강은 공적 영역을 넘어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진료가 기피되게 되고 환자와 병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병원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병원은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부추길 것이고 이는 곧 환자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원 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서비스 이용 환자수는 20% 감소하였고 환자 한명 당 평균 진료비는 111.1%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의료민영화의 공공성 침해를 더 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선진국이 공공성을 지키면서 의료민영화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이유는 의료민영화 이전 공공병원이 충분히 보급되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의 비극의 전형적 사례인 미국의 30%보다 낮은 공공병원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민영화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공과대학 건축학과 | **소 속** | 경영대학 경영학과 |
| **학 번** | 2009 | **학 번** | 2011 |
| **이 름** | 이\*\* | **이 름** | 곽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민영화, 허용해야하는가?**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문캠퍼스 소속학생과 자연캠퍼스 소속학생으로 구성된 팀으로 팀명은 MIS입니다. MIS는 ‘Made In Sadang’의 줄임말로, 저희가 토론 준비를 하면서 항상 만났던 곳이 명륜과 율전의 중간지점인 사당이었던 것에서 착안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날을 빼고 잠깐의 틈새시간이 날 때면 거의 매일매일을 사당의 한 카페에서 마주앉아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만의 생각과 논리를 정리한 근거들을 고스란히 담은 입론은 다름아닌 사당에서 나왔기에, 즉, Made In Sadang 이라는 의미에서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균관대 토론동아리 SKFC에서 신입동기로 만났습니다. 둘 다 ‘토론’이라는 것을 접하고 시작한지는 몇 달 되지 않아 아직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 투성이지만, 토론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바쁜 하루를 마치고 사당으로 가는 버스를 탈 때면 몸은 피곤했지만, 같이 토론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사당으로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의 목표를 우승으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후회 없이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또 다른 반대되는 생각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는 갚진 경험을 얻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동아리를 통해 할 지속적인 토론활동에 있어서 더 성숙한 마인드와 사고방식을 길러줄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찬성1>  ‘의료민영화, 허용해야하는가?’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견 개진에 앞서, 논제의 용어를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과 동일한 의미로, 외부적 투자행위를 할 수 없었던 비영리법인에서 벗어나 자법인 설립을 포함하여 영리추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찬성측은 첫째, 의료민영화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둘째, 정당성과 시의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30  먼저 실효성에 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가 허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5s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매년 약 30%의 상승세를 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목표치인 15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의료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하며, 의료관광 유치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도입이 의료기관에 자본유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병원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제도는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 산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의료문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평가되지만 이는 수도권에 국한된 병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에는 첨단의료기기와 우수인력 부족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내에는 암 치료 전문의 고급의료기기를 갖춘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도민들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지난 2002년 전체 암환자의 27%였던 것이 2008년에는 45.9%로 18.9%나 증가했으며, 희귀암 환자일 경우 그 증가율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이 설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부산, 대구 및 각 지역권마다 고루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각 지역권별로 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 지역권을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 커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허용은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2>    찬성측 두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선 입론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양극화 해소의 효과를 가지며 국가적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예고 드린 대로 두 번째 입론에서는 왜 영리병원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정당성과 시의적 필요성을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리법인화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게 설계된 제도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영리병원화를 ‘의료보험 민영화’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국민이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100% 모두가 가입자 명단에 올라있는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설립 중심의 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의료보험제도를 확실히 유지하는 상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처럼 의료보험을 모두 사보험화 시키는 ‘의료 보험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의 의료보험을 유지한 채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은 미국 정책과 다르며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영리병원은 시의성이 충분한 대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병원은 발전동기의 부족과 재무적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과잉진료 등의 문제상황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이 수익성이 낮은 다인병실을 돈이 되는 개인병실로 바꾸고 있다는 소식들을 자주 접해본 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상황은 우리 ‘비영리’라는 이름 아래의 수많은 규제 속에서 발생합니다. 병원은 철저한 수가 제한 규제로 인해 차별적인 서비스에도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해 발전 동기가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은 의료법 제 56조 아래 광고행위에 강도 높은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결국 병원의 현실적 시장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자체의 시장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불안정 에서 탈피하기 위해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창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앞서 언급했던 과잉진료행위가 나타나고 수익을 얻기 위한 병실 개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영리법인 도입을 통한 민영화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영리화된 병원은 투자유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자체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수가 수준을 유지하고 의료기기산업 등에 투자하는 등 자법인을 세워 추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병원의 시장성이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병원의 발전동기 또한 확보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 행위 등의 병원의 부정적 수익창출 행위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시장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의료행위에서의 부정적 이윤창출에의 유혹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보험 영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안된 정당성을 갖춘 대한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병원의 시장성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측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찬성합니다. |
| **반대**  **입론** | <반대1>  반대 측 첫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첫째, 영리병원의 국내도입은 정당성이 없고,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점과 둘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의료민영화는 소비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복효과’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는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로 권위에 따른 무조건적인 복종 경향을 의미합니다. 제복 중에서도 권위가 높은 제복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의사가운’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운’을 입고 비싼 의료행위를 권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병’이라는 이름 하에서 쉽게 약자가 됩니다. 개개인에게 ‘건강’이라는 화두는 이성적인 사고가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소비자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성질을 지녀야 할 병원이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 열중하게 된다면,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등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함이 예견된 일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보다 국가와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시행해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영리병원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 아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병원인 1차 진료기관보다 대형병원인 2차 3차 진료기관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노령화에 따라 동네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고 전문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2012년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종합병원 이용률을 분석했을 때 60세 이상인 경우가 48.8%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령화 진행이 가속화 될수록 종합병원의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의료기관이 영리 의료법인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그대론데 크게 늘어난 의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노령층이 충분한 소득을 모아 놓지 않았다면 중증의 병을 치료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가 국내에서 효율적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또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근거는 무수한 예측만 존재할 뿐 뚜렷한 근거를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의 도입을 주장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149개 연구내용의 77%가 3차 기관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국내에서 영리병원은 비효율적이며, 동일한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더 비싼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잘된 해외 사례를 보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왔던 것과 달리 국내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이윤추구가 아닌 병원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고 공공성 강화의 길을 모색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이상 반대 측 입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2>    반대 측 두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론에서는 의료비 상승, 병원의 극단적 기업화 측면을 다루며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겠습니다.  첫째로, 영리법인 도입을 통한 의료민영화는 의료기관의 극단적 기업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영리병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공의 ‘병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투자를 받는 법인’이라는 차가운 기업이미지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후자를 느꼈습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명칭과 같이 영리병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LG와 같은 기업입니다. 병원은 이제, 투자를 받아 생긴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화된 병원은 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내기 위해 효율적 경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윤추구 논리 아래 의료비 증가, 의료윤리 저해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라는 공공적 요소와 ‘의료법인’이라는 기업으로서의 경제성 사이에 주객전도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병원 간 수익창출을 위한 경쟁의 과정 속에서 병원의 투자는 의료비를 높은 폭으로 상승 시킬 것입니다. 영리화된 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이익분배를 위해 수익성에 집중하게 되는 과정에서 타 병원과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의 차별성을 위해 병원에서는 ‘스타 의사’를 영입하거나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의 방법으로 타 병원과의 차별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쟁적 행위는 곧바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쟁적 투자는 의료비 상승을 초래합니다. 경쟁적 투자가 의료비상승과 직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KDI 연구소에 의해 이미 연구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년간 의료비 증가율은 5.1%로 OECD 평균 1.4%보다 3.6배 높습니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MRI 도입 비율이 16%로 OECD 기준보다 5% 높고, CT 도입비율이 37%로 평균보다 17% 이상 높다는 것을 보이며 고가장비 과잉 공급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구결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의료기기 과잉 투자 등으로 날로 의료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영리화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를 들여놓은 병원이 투자에 대한 이익을 거두기 위해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권할 것입니다. 환자는 상대적 약자로서 높은 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로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는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번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병원의 기업화,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민영화는 추진될 당위성이 없습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글로벌경제학과 | **소 속** | 글로벌리더학부 |
| **학 번** | 2011 | **학 번** | 201 |
| **이 름** | 정\*\* | **이 름** | 공\*\*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대 토론동아리 SKFC에서 만나 결성된 팀 '공정'입니다. 팀 이름은 저희 둘의 성 '공'과 '정'을 붙여보니 신기하게도 좋은 뜻의 단어가 만들어져 '공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도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며, 열띤 토론, 의미 있는 토론을 펼치겠습니다.  의료민영화라는 주제는 참 많이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성균토론대회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의료민영화에 대해 배워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논리적, 감성적 대립이 맞붙는 토론의 장은 저희 둘에게 늘 활기찬 에너지를 안겨 줍니다. 토론의 매력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처음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찬성 혹은 반대의 편견이 토론을 하다 보면 허물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토론이야말로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참된 대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토론대회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 즐겁습니다. 과정도, 그리고 운이 좋으면 결과까지도 즐겁기를 바라며 팀 소개 및 지원 동기의 글을 마칩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오늘의 논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여부에 대해 저희 찬성측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의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현행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의 설립만을 허용하되, 현재 외국인 투자비율에 50%의 하한선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를 차차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찬성측의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입론 전개에 앞서 먼저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즉 영리병원은 용어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4년 8월 기준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측은 크게 두 가지, 영리병원의 설립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는 이유를 들어 영리병원 설립에 찬성합니다.  영리병원의 설립은 병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용이한 자본확보, 의료공급체계의 다양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의사와 비영리기관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를 들어 영리병원의 유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각종 규제로 수익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 및 사무직 직원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도입입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투명성 제고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리병원의 도입은 의료공급구조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경제성장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로 증대 및 다양화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 건강관리, 맞춤 의료, 재택의료 등 다양한 고급 신규 의료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인프라가 국내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의료기관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소수 대형병원의 시장 장악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소수 대형병원에 대한 초과수요는 중소형 병원의 신기술개발, 신규 설비투자 등에 지체를 초래하여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병원이라는 제 3의 선수를 의료서비스 시장에 투입시켜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다가올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영리병원의 설립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낳아 국부창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은 경제성장의 하락이 점차 확실시되는 현 시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산업입니다. 의료서비스 산업 중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의료관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및 의료수가는 타국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제에 가로막혀 실제 외국인 환자의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의 설립은 잠재적인 외국 의료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득 외에도, 영리병원 도입은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이 평균 12.4%임을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기본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 의료서비스 외의 선택적 의료서비스 영역을 공공성이라는 명제 하에 그 발전 가능성을 알고도 개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리병원의 적극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반대**  **입론** | 얼마 전, 시대를 풍미했던 ‘마왕’ 신해철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의료사고가 결정적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 상업화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모 TV 프로그램에 비만수술 전문의로 출연하면서 사실상 간접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굳이 영리병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의료 행위의 상업화는 이미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성과 윤리의식을 지켜야 할 의료 분야가 눈앞의 이익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이미 위태로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다. 반대측에서는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 서비스를 질적으로 하락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영리병원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먼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벌어다 주기 위해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회사에서 만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고 환자에게 권하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래 의술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말은 병원 역시 일반 기업과 똑같이 이윤 추구를 제 1의 목표로 삼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의료서비스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술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병원의 주인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투자가들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리병원은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경자구와 제주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기존 비영리병원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법인 설립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서울대병원이 호텔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대형병원이 더욱 대형화 될 뿐, 힘 없는 중소병원들은 자본 유치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이 악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게다가 의료진들이 영리병원으로 유출되어 지역 병원이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은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킵니다. 영리병원 찬성론자들은 기존의 병원들은 영리병원의 설립 유무와 관계 없이 의료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역시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며, 기존의 비영리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리병원의 의료비 상승이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지금 당장은 경자구에 한정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그 외 지역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리병원의 숫자가 증가하면 전반적인 국내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적들이 실제로 달성될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영리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 의료 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어느 면에서 보나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경영학과 | **소 속** | 경영학과 |
| **학 번** | 2010 | **학 번** |  |
| **이 름** | 이\*\* | **이 름** | 김\*\* |
| **연락처** | 01029490589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민영화, 도입해야 하는가? -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 허용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저희 팀은 이제 곧 졸업을 앞둔 학교의 큰언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내기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함께 토론동아리를 하는 등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졸업하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고 성균토론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우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현재 정부는 여러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외국인이 참여하는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 즉 영리 병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 논제에서 의료민영화란 기존처럼 수익을 법인을 위해 재투자하는 형식의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영리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 주체를 개인과 민간 자본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병원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시장 또한 공급자 위주로 움직이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 의료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의료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찬성측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의 정당성, 합리적인 가격 형성의 경제성, 국부 증대의 효과성, 도입의 시의성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의료민영화는 첫째, 의료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민영화'의 장점은 시장경제원리에 산업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증대시킵니다. 병원에 민간자본 투입이나 일반인 의료기관 설립까지 허용된다면, 병원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할 것입니다. 즉, 보다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환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보험 진료 분야인 라식,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영리 목적의 진료로서 많은 안과의들이 서비스 품질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수술의 품질은 상향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80년대 영리병원을 도입한 싱가포르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15%를 기록하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합니다. 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오히려 진료서비스 측면에서의 가격경쟁이 붙어 환자들에게 더 경제적인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료서비스에서 가격경쟁을 벌이더라도 각종 부대 서비스로서 수입원을 차별화하여 병원 역시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원 내부적으로 자금을 순환하지 않고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이 병원으로 흘러들어 손쉽게 첨단 의료기기를 구비하거나, 병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환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병원을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가 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인 지분제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입니다. 영리병원 설립 이후에도 의료보험은 동일할 것이며 의료비의 상승은 기술 발달과 경쟁의 단계를 거쳐 다시 정상화를 맞을 것입니다.  셋째, 민영화를 통해 국부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가의 부도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영리 병원은 글로벌 의료 산업의 교두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에서 의료관광을 올 정도로 그 질이 뛰어나지만 동남아시아의 병원들이 연간 200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2만명을 유치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병원들이 영리 병원을 통해 호텔, 관광과 연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료수준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었지만 국가 주도로 영리병원이 설립되어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었고 여행이나 수영장같은 부대사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게 하여 많은 의료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을 외국에 지불한다는 점에서도 영리법인화를 통한 병원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시급한 일이니다. 국내에도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고 여러 부대사업들과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리병원의 생산유발액은 GDP의 1%에 해다아는 약 10조 9000억원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약 11만명이며, 이는 매년 3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은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가져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약 10만 2000천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료민영화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시의성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보다 선진화될수록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로써 특정 산업을 방어하기보다는 시장원리와 사회적 의식에 의해 자발적인 운영과 규제를 통해 성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역시 이 발전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규제하에 얽매이게 하기보다는 성장가능성을 믿어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의료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병원에 경쟁 논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급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독점적 시장을 타파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 **반대**  **입론** | 의료민영화는 의료시장의 경쟁 왜곡, 생명산업의 특수성, 상업적인 의료서비스 편중, 대책의 존재를 근거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첫째, 의료민영화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의료시장을 왜곡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는 경쟁시장 논리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발전을 꾀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가격 상승 및 대기업화,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선 가격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 초기에는 시장진입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지만 일단 시장진입에 성공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 결국에는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이미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수술비가격이 너무 높아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의료보험의 규제를 넘어가는 고액의 치료가 이루어지며 영리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병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중소병원은 인수합병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현재도 대형병원과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의원은 민영화 이후 대기업화 된 민간병원에 흡수되기 쉽고, 이는 독점시장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영리병원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업무 중 상당기관을 아웃소싱사면서 고임금 직원을 퇴직시킨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영리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리법인들의 수익추구로 의료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계층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규제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의 무력화를 전제합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병원에 자율성을 주게되면 자연스럽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영보험이 활성화 됩니다. 민간 보험과 영리병원의 결탁은 공공의료의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빈부의 차이에 따라 가입 보험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무전질병, 유전치료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면 의료 양극화를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부유한 고소득자들은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저소득층은 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지나친 상업화로 의료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이미 대학병원 등은 비싼 진료실을 강제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환자들에게 의료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시장논리까지 더해지고 투자자들이 개입된다면 병원은 상업적인 진료과목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비보험처리가 되는 성형, 치과, 라식 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 전쟁, 과잉진료 등의 결과가 우려됩니다. 환자는 경제적 이익을 낳기 위한 수단이 되며 굳이 필요 없는 진료를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의료기기관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규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시행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최단기간 내에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했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비억제 정책이 있었고 의료서비스 품목의 제한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반시장적 장치를 제거하면 영리병원의 도입이 없어도 충분히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가능합니다. 규제정책 철폐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의료비 급등과 의료 왜곡을 가져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산업을 상업적 논리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공의료체계를 훼손시키는 의료민영화는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인문과학계열 | **소 속** | 인문과학계열 |
| **학 번** | 2014 | **학 번** | 2014 |
| **이 름** | 이\*\* | **이 름** | 김\*\*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파릇파릇한 새내기 두 명이 뭉친 '상종 못할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 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열정이 넘치는 두 남자 상민과 종민의 앞 글자를 땄고 개성 넘치는 평소 행실 등을 고려해서 '상종 못할 것들' 이라는 팀 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한국사 학회'라는 같은 역사학회에 소속되어 여러 역사적 안건에 대해 토론을 했고, 토론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균 토론대회가 곧 개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대회가 마음껏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 또한 저희 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였고,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기에 이렇게 성균 토론대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저희 팀은 의료 영리법인 도입에 관해서 찬성합니다. 입론을 하기에 앞서 의료 영리법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영리법인은 현재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일반 병원들과 달리 영리 추구가 가능한 병원을 뜻합니다. 흔히들 의료 영리법인을 의료민영화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완벽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보험의 보장성 축소, 영리법인의 설립 , 당연지정제 폐지 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리법인 설립은 그 중 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의 하에 저희가 의료 영리법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의료 질의 개선에 있습니다. 의료 영리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병원들이 시장경제에 노출되어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게 되고 이는 병원 사이의 경쟁과 함께 의료 서비스나 기술의 발전을 야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보험에 의해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는 적자를 보면서 수술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 영리법인의 설립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이 손해를 메꿈으로서 비인기 진료과목의 존속과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뿐더러 현행법 상 의료 영리법인 수익의 80퍼센트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의 세속화 또한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째 이유는 영리법인 설치를 통한 의료 수익의 극대화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은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훌륭한 수준인데 전 세계 의료 관광객 4000만명중 단 8만명만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 기술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수준임에 틀림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예시를 들어 보면 의료 영리법인 설치를 통한 고급 의료 시설을 다수 설치하면서 엄청난 수의 의료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이로 인한 수입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보존되는 이상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가 보장 될 것이고 이에 더해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영리법인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료경쟁력이나 수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유 경쟁을 통한 의료 기술의 발달입니다. 의료 영리법인을 설치하게 되면 병원 사이에서도 자유 경쟁이 허용되게 되는데 이 경우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순한 부대시설의 발달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의료 기술의 발달을 통한 환자 유치를 도모하는 병원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의료 영리법인 설치는 수익을 얻으려는 기업의 특성상 의료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전 국민이 누리는 의료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료 영리법인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의료의 질과 서비스의 향상 , 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익 극대화 라는 세가지 이유로 설명드렸습니다. 보시듯이 의료 영리법인 설치는 서민들을 죽이는 의료 정책이 아닌 국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를 전혀 침해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기술과 수익의 발달을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들어 저희 조는 의료 영리법인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
| **반대**  **입론** | 저는 의료 민영화, 그 중에서도 병원의 의료영리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병원의 의료영리법인 설립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영리병원만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여길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영리병원화 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뒤쳐지지 않으며,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의료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또한, 의료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일, 의료영리법인이 설립 될 경우 의료혜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또한 일반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국공립병원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부에 의하여 편중되는 현상을 야기할 것이고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 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영리법인은 대기업들이 의료시장에 뛰어 들어 거대 의료 기업들이 등장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근거하면, 기업은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병원은 의사 및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최소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부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듯 의료영리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설립 시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이에 따라 의료 영리법인 설립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글로벌리더학부 | **소 속** | 글로벌리더학부 |
| **학 번** | 2014 | **학 번** | 2014 |
| **이 름** | 김\*\* | **이 름** | 서\*\*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저희의 팀명은 볼펜에 지우개입니다. 연필로 쓴 글은 필체가 지우개로 쉽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볼펜으로 쓴 글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볼펜으로 쓴 글처럼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토론에 임하고자 볼펜에 지우개라는 팀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저희가 성균 토론대회에 지원하게 된 것은 일단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저희는 국가행정을 다루는 정책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리더학부의 학생입니다. 그렇다보니 같이 정책학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시책에 대한 관심을 높혀왔습니다. 특히 의료민영화는 스피치와 토론 시간에 토론의 안건으로 다뤘을 정도로 각별한 주제입니다. 이에 저희는 의료민영화 라는 안건을 보다 세밀히 공부할 수 있는 성균토론대회에 참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안녕하세요.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이란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의료 외의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데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입의 전부를 영리법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입의 일부분은 사회를 위해 사용되거나 자회사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중소병원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줌으로써 대형법원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재단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밀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과 달리 외부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어 재정적 문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까닭이 큽니다. 따라서 중소병원이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서비스 외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도 다양화될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국내 의료서비스로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영리법인 설립의 허용은 의료 환경에 대한 재투자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올려줍니다. 더불어 여러 부대환경을 개선시켜줌으로써 구매자의 효용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해외 의료서비스와의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성형외과 의원처럼 한국 의료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법인의 설립 허용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리법인의 설립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병원이 설립한 자회사는 의료서비스 외적에서만 이윤 추구가 허용되며 의료수가제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영리법인의 존재가 병원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이어져 과도한 의료서비스 가격의 폭증이나 질의 폭락을 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 **반대**  **입론** | 본 입론은 의료 민영화를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료법인(모회사)의 영리법인(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제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목적으로는 중소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장시킴으로써 중소병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현재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자생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크게 세가지 쟁점을 통해 자회사 설립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여 본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첫 번째, 주된 의료법인인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양상 변화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포괄 수가제에 있다. 포괄 수가제에 의해 일반적인 의술에 대한 급여가 낮게 측정되어 있어 병원의 수익이 적어지는 것이다. 중소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벌어 모병원에 재투자하는 구조는 곧, 포괄 수가제에 의해서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는 동네 의원과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 행위에 따른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학 법인과 의료 법인만이 유지되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동네 의원은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동네 의원이 줄어들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모회사인 중소병원이 자본에 의해 장악될 우려가 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자회사간의 합병 및 인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거대 자본을 투자 받은 하나의 자회사가 다른 중소병원의 자회사를 합병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여, 몇 개의 중소병원이 하나의 자본 네트워크로 엮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자회사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른 중소병원에 의료기계 등의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자회사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모병원이 다른 모병원의 자회사의 영리 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병원의 자본에의 예속 가능함은 새로운 의료 기술 및 기계의 도입 등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를 예측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모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병원의 자본에 대한 예속과 의료비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 제도는 병원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 병원은 공익의 차원이 높아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사익의 추구에 앞서 국민들에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하여 모병원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이는 것은 모병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적어지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함을 나타낸다. 즉 전체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회사 설립 허용이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선 세가지 논의를 통해 국내 의료 서비스 구조에서 중소병원의 자회사 설립을 허락하는 것이 동네 의원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중소병원 자체도 증가와 발전보다는 하나의 자본 네트워크화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병원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글로벌리더학부 | **소 속** | 경영학과 |
| **학 번** | 2010 | **학 번** | 2014 |
| **이 름** | 전\*\* | **이 름** | 구\*\*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토론왕 입니다.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듣던 중 토론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고, 토론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대로, 토론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피치와 토론 수업은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1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토론대회에 참가하여 몸소 토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입론1  <서론>  1.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  1)정부에서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라는 용어 아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이 논제는 현재 국회와 전문가들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2. 그 중에서도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많은 국민들은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병원들이 영리화가 되어 '의료비가 미국 수준으로 폭등할 것이다.' 등의 근거 없는 루머에 선동되고 있다.  3. 입론 1에서는 의료법인과 그 자회사가 무엇인 지,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의 허용 취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론>  1. 대한민국 의료법인과 자회사  1)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의료법 시행령 제 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정부는 의료법인들이 '영리 자회사'설립을 통하여 영리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어주려 한다.  2)영리자회사  1)자회사: 모기업에 의해 자본적으로 지배를 받는 회사.  2)대한민국 상법에서는 'A기업이B기업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B기업을 A기업의 자회사라고 한다.'  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왜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합법화하려 하는지 대한민국 의료법인 실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2. 대한민국 의료법인 실태  1)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1)제공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인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 그 정도와 인상이 결정된다.  (2)의료수가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년 의료수가의 인상은 쉽지 않다.  ①실제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각 단체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 없이 모두 합의된 경우는 2005년(2006년분)과 2013년(2014년분)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수가'를 초래하였고, 의료법인들의 경영성 악화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  2)의료법인들의 경영성 악화  (1)대한민국 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13개 국립대 병원의 2013년 한해 적자 규모는 1273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립대병원 51개도 지난 한 해 445억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2)이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병원 폐업률이 연 8%에 이른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해야 한다.)  3. 의료법인의 경영난 해소 해결방안  1)의료수가 인상: 보험료인상과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인상 협상에 어려움이 따른다.  2)병원의 부대수입 창출: '의료수가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의료법인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결론>  1. 지금까지 의료법인과 영리자회사, 대한민국의 현재 의료법인 경영실태,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 취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2.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국민들은 막연한 '의료민영화'라는 타이틀 아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오해하고 선동되고 있다.  3. 입론2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이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할 것이다.  입론2  <서론>  1.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병원이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해 환자들에게 무분별한 상업행위를 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마치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기업이라는 가정을 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이다.  2. 입론2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영리자회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론>  1. 의료 민영화에 대한 오해와 루머  1)자회사를 통한 병원(의료법인)의 실질적 소유가 가능해 질 것이다.  (1)자회사를 통하여 외부 자본의 병원에 대한 지배력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2)자회사의 개념에 의하면 병원은 자회사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한다.  (3)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모두 '병원'이 가지게 된다.  2)자회사를 통한 병원(의료법인)의 상속이 가능해질 것이다.  (1)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의하면 자회사는 모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2)자회사는 모기업에 대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가지지 못한다.  (3)외부 투자자가 자회사의 주식을 상속한다 하여도 상속자는 의료법인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즉. 병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3) 의료법인은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의료행위'를 소홀히 할 것이다.  (1)의료법인의 경우 자회사 출자 자산은 모기업 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게 하면 의료법인의 목적의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자회사 남용 방지 장치' 예시로 나와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4)의료법인의 공공성은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훼손된다.  (1)자회사 설립 가능 기업의 요건인 '성실공익 법인'은 자산 운용 수익의 80% 이상을 직접공익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2)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용수익의 80% 이상을 의료와 관련된 직접공익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5)의료법인의 흑자 부대사업 (주차장, 장례업 등)이 자회사로 넘어가 병원의 적자가 증가할 것이다.  (1)현재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은 자회사가 운영할 수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다.  6)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제품들(식품,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사들의 권유를 장려할 것이다.  (1)환자들은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환자를 무시하는 주장들이다.  2. 영리자회사 설립의 기대효과  1)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GDP창출  (1)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의료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2)의료신기술 개발  (1)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면 의료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닌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결론>  1.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미래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의료산업화는 필연적이다.  2.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제거하여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
|  | 반대입론1.  서론  1. 의료 민영화는 의료와 민영화 두 가지 단어로 나뉘는데요, 의료민영화를 정의 하기 전에 민영화의 정확한 뜻부터 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영화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공공영역에서 기업, 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아십니까?  1) 모든 의사들은 의사가 되기 전에 이 선서를 선언하며, 이는 의사가 갖춰야 할 신념과 동일시 됩니다.  2)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3)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직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더럽혀 질 수 없는 신성한 직업입니다.  4) 하지만 이번 의료 민영화로 인해 의사들의 선한 의지가 더럽혀지려 하고 있습니다.  4. 저는 이번 입론에서 자회사의 정의, 자회사를 통한 가능한 부대산업,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첫 번째 자회사의 정의입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342조의 2에 의하면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다면 전자를 모회사, 후자를 자회사라고 지칭합니다.  (1) 이는 자회사가 자기 주식의 최대 49%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회사는 자신이 사업 추진한 이윤의 최대 49%를 가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결론적으로, 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이라, 이윤추구가 아닌, 적자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자회사는 자신이 이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 최대한 환자를 착취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2. 자회사를 통한 가능한 부대산업,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의료민영화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면, 기존에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업, 산후조리업, 매점,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을 자회사가 이윤창출을 위해 부대사업을 병원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숙박업, 여행업, 건물 임대업, 식품, 의류 판매업 등을 자회사의 부대사업으로 확대 가능해 졌습니다.  (1) 여러분, 많은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료를 받나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의사와 병에 대해 토론하면서 먹을 약이나 재활치료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2) 그저 담당의사가 권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평소에 무엇을 사서 먹으라고 하면 사서 먹고, 어떤 제품을 쓰라고 하면 그 제품을 씁니다.  (3) 이런 일반 환자들을 보았을 때, 의사들의 어떤 권유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다면, 자회사와 의료인들은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더 비싼 의료기구를 제안할 것입니다.  (4) 이미 의료민영화가 되어버린 미국에서는 이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곰돌이 인형을 기침 억제기구로 21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사진을 보여준다.). 한국도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이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결론  1. 지금까지 자회사의 정의, 자회사를 통한 가능한 부대산업,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여러분 밤 벌레가 들은 밤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 벌레 먹은 밤은 겉은 멀쩡해서 먹고 싶어서 까면, 그 속의 한 부분 이미 새까맣게 썩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3.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논리들은 의료민영화를 잘 포장해서 마치 국민들이 받는 혜택 은 원래 그대로, 또는 그 이상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의 열매는 밤 벌레처럼 기업들이 파먹어 정작 우리는 썩은 밤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4. 다음 반대입론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에게 허가되는 부대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론 2  서론  1. 현재 의료법 제33조에 의하면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병원의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이 내용은 성형외과 같이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병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의료를 의료법인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선에서 의료비를 받는다는 공공의료의 의미입니다.  (2)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공공의료의 개념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중요시 되는 가치이며, OECD회원국들은 전체 병실에서 71.3%가 공공의료 기관의 병실입니다.  (3) 하지만 한국의 의료기관은 병상기준으로 90%가 사립병원이며 이는 OECD 공중의료 기관 비중인 73.1%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의료민영화가 지향하는 시장화된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조차 30%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이렇게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보유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한다면 현재 미국에서 의료민영화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A. 일례로, 2014년 7월 20일 이상호 기자는 배가 아파 미국 병원 간 날 첫 날 1000만원을 청구 받고, 몇 일 뒤 재검가서 350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2.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민영화는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큰 부작용이 있고, 앞서 언급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번 입론에서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자회사에게 인가되는 부대사업의 영향을 주요 부대사업 3가지, 종합체육시설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건물 임대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론  1. 첫 번째, 종합체육시설업입니다.  (1) 복지부는 병원 부대사업에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자회사로도 허용했다.  (2)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각종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축소시키고 병원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체육 시설을 이용을 권유하는 조치입니다.  2. 두 번째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입니다.  (1) 병원이 바라는 의류 등 생활용품업에는 환자복, 입원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등을 포함합니다.  (2) 현재는 병원 입원이나 이용시 환자복의 침구류에 대한 비용이 추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의 영리추구 방법으로 활용되면 '고급 매트리스', '고급 환자복'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 입원용 생활용품이 개발 될 것이다.  (3) 이는 그리고 병원은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원래 환자복, 침구류의 질을 떨어 뜨려, 환자들이 침구류와 환자복 등을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3. 세 번째, 건물 임대업입니다.  (1) 병원 부대사업으로의 건물임대업 포괄적 허용은 사실상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는 단순히 건물임대업이 아니라 병원의 부대사업을 지금까지의 열거방식에서 사실상 부대사업 전면허용에 금지사업 열거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A. 예를 들면, 병원 건물을 허가된 사업에 대해 자회사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건물을 임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  1. 여태까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자회사에게 인가되는 부대사업의 영향을 주요 부대사업 3가지, 종합체육시설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건물 임대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 여러분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방 세 모녀의 자살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이 세 모녀는 어머니가 다쳐서, 식당 일을 못 하게 되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합의(?)하에 자살한 사건입니다.  (2) 더욱이 가슴이 아픈 이유는 죽기 직전에 주인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며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두고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3. 의료민영화 현재 한국에서 공립병원이 10%로 되어 있는 현재, 미국의 1/3인 현재, 의료민영화는 제 2의 제3의 세 모녀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

|  |
| --- |
| 「성균 토론대회」지원 서류 |

|  |  |  |  |
| --- | --- | --- | --- |
| **소 속** | 글로벌리더 | **소 속** | 글로벌리더 |
| **학 번** | 2014 | **학 번** | 2014 |
| **이 름** | 김\*\* | **이 름** | 전\*\* |
| **연락처** | 010 | **연락처** | 010 |
| **팀 명** |  | | |
| **주 제** | **의료 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 |
|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 의료민영화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 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고 단순히 ‘의료민영화’라는 어휘에만 집중하여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듯 하여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알고 있으며 개략적인 찬반 입장은 알고 있지만 그 실질적이고 수치적인 근거나 취지, 정확히 의료민영화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토론에 참가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민영화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그 득실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의료민영화를 시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동기에 따라 저희 팀은 팀 명을 ‘혜민원’라고 정하였습니다. 혜민원은 조선시대 빈민의 구휼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관아입니다. 이를 팀 명으로 정한 뜻은 바람직한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확립하여 모든 국민들, 특히 약자와 소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쓰자는 저희의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 | |

|  |  |
| --- | --- |
|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  **(각각 4분 분량)** | |
| **찬성**  **입론** | 안녕하십니까, 의료민영화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참여정부 대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관련 정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지금, 의료민영화는 대중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주어진 주제인 '영리법인 설립 허용여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란, 의료행위의 공급이나 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영리법인이란, 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통해 만들어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이번 주제는 의료기관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가가 되며, 찬성측은 필요성과 실효성, 비용편익분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의 현실에 미루어보았을 때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은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병원과 경제특구 내 병원, 개인 병원을 제외한 법인병원의 경우 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쇄성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병원협회와 현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의 200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병원들의 영업 이익금은 1994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또한 20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들의 자금상태 현황에 대한 질문에 80% 이상이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62%가 항상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신용평가 관련 자료에서 의료기간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이 심각하게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들이 재정난을 겪을 경우, 의료기술과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국민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특히 중증 질환에 대한 조치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의료기관들의 담보대출능력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어 정상적인 대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의료채권법의 입법이 무산되면서 현재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의료기관들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영리법인의 허용을 비롯한 몇몇 정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병원들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영리법인 설립 허용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유를 찬성의 두 번째 이유로 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부터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화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을 관련 논의에 있어서 최상의 목표로 인정해왔습니다. 병원의 영리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면, 병원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민간의 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악화와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기술과 인프라에조차 투자를 할 수 없던 병원들에게 근본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어온 잉여금 때문에 투자의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의 감소, 그리고 또 다시 이로 인한 투자의 감소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왔는데,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 한 순간이라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투자의 증가와 함께 잉여금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자본의 투입은 지원금에 한계가 많은 국가의 직접지원과 이미 무산된 채권의 발행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법인의 설립이 불러올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에 비해 얻어질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영리법인 설립 허용에 찬성합니다.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문제들은 크게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질의 하락, 그리고 영리법원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부작용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부수적인 정책들과 규제를 덧붙임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먼저, 가장 크게 걱정되는 재벌의 의료기관 잠식이나 사무장 병원의 증가는 재벌의 법인 주식 소유분을 제한하고, 현행법상 이미 위법행위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의 상승은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비영리법인병원들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정책을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비영리법인병원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영리법인병원의 독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반대**  **입론** | 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불필요성과 부작용 때문입니다.우선,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는 불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비영리 법인으로 성립된다는 기본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병원이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 법인을 영리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병원이 영리 추구를 목표 중 하나로 삼게 되면 보다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생길 것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자격증을 획득한 소수에게 제한되어 있어 의료서비스는 제한된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치료비가 전반적으로 상승될 것이며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어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일부 제한 받는 계층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민영화의 필요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헌법상의 가치를 훼손할 것입니다.둘째로, 의료민영화를 통해 병원들의 재정난 해결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서 실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의 2011년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논문에 따르면, “병원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병원이 속출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수도권에 병상이 증가하는 등 병원 간 과잉경쟁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각종 비급여 항목의 개발과 과잉진료를 통한 환자대상 돈벌이 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미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는 이유가 병원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를 기대하는 것인데 의료의 질 연구의 효시자이며 이 분야에 많은 연구업적을 남긴 도나베디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전체 공급이 제한된 의료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공정가격이 결정되고 그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민영화는 이를 달성하는 대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질의 향상 없는 가격의 상승만 초래하여 국민의 주머니를 비워 영리법인 병원의 주머니를 채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 입론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